

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9. 9. 23. 박형덕 의원외3명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. 9. 28.

다. 상정일자 : 제1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2차 본회의 상정, 토론 및 검토

제3차 본회의 상정, 검토 및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2009. 4. 1.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의무에 관한 방법과 절차를 조례에서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금지를 제외한 다른직을 가진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.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이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법률 제9577호(2009. 4.1)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금지를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 및 같은 법 제24조(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)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